

객원 및 특임교수임용 규정

제정 2014. 10. 2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객원 및 특임교수의 자격, 임용절차,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① 객원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내·외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및 교육전문직에 근무경력이 있고, 전공분야 또는 근무분야에 대한 경력이나 연구업적이 뛰어나 그 분야에 대한 교육,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하여 본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. 다만, 예·체능계열과 특수분야는 특별한 자격이 인정될 경우 학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특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육, 학술분야 연구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본 대학 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임용절차) ① 객원 및 특임교수의 임용대상자는 총장 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② 추천된 후보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
제4조(처우) ① 객원 및 특임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② 객원 및 특임교수에 대하여 공동연구 및 학생지도를 위촉할 수 있고, 교육, 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임용기간) 객원 및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만 75세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